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6. 8.(수) 16: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6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신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에 관한 건 (2022-27-10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신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정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신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 ‘22년도에 신규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속하게 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제3호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입니다. <2> 제안 이유,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의 계도기간이 ‘22년 6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의무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추가 적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입니다. <3> 추진 경과, ‘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개정하였으며, 12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였습니다. ‘21년 12월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고, 12월 10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시행하였습니다. ‘22년 1월~3월 신규 의무사업자 지정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4월 의무사업자 조치 현황 점검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 첫째 현황입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21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중 ‘기술적 필터링’ 조치는 장비수급의 어려움, 기술 테스트 등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표>를 보시면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총 88개이며, 이 중 신규사업자는 11개 사업자입니다. 둘째, 필요성입니다. ‘22년에 신규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위와 동일한 사유로 현 계도기간 내에 필터링 조치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추진방안입니다. ‘22년도에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신규로 의무사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입니다. <5>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오늘 계도기간 적용 안내 통보를 하고, 6월 10일부터 기존 사업자 대상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1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2021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1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결과 및 조치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1월부터 대상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였고, 금년 3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2021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 55개와 고시의무사업자 77개를 포함하여 총 132개사업자입니다. 사업자별 편성의무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21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총 132개사 중 편성의무를 달성한 사업자는 119개사이며, 미달성 사업자는 13개사입니다. 다만, 미달성 지상파방송사 대부분이 99.99%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방송 의무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하게는 필수지정사업자 총 55개 중 11개 사업자가 의무 달성을 하지 못했고, 고시 의무사업자 총 77개 중 2개 사업자가 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주요 내용입니다. 미달성 주요원인으로는 제작업체 담당자 부주의, 송출 프로그램 시스템 및 서버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편성의무 미달성 주요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치방안입니다. 우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미이행사항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등 개선계획(안)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방송 기본 지원비율에서 편성의무 미달률만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통상의 경우 목표의 99.99%를 달성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0.01%를 달성하지 못해서 크지는 않지만 작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행정이 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사무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99.99%의 달성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어떤 방송을 하다가 몇 분 또는 어떤 방송이 통째로 수어방송이나 장애인방송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비장애인들이 TV를 시청하면서 갑자기 화면이 없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들에게는 매우 큰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해서 99.99%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처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주의해서 생긴 사고인 것 같은데 장애인방송은 모든 사회 구성원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2021년도 장애인방송 이행실적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셨는데 평가 결과 132개 사업자 중 119개 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수지정 사업자 7개사와 고시 의무사업자 1개사가 '20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위반하였는데 이 정도의 위반율이 장애인들의 시청에 큰 장애를 줄까 처음에 저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사무처의 보고를 보니까 이것은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명사유를 보니까 기술적·관리적 실수나 혹은 경영 악화 '20년, '21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일단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에서는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지금처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또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1년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의무를 잘 지키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담당자 실수, 부주의로 인해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해당 방송사에 자성과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방송서비스는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 서비스로 인식됩니다. 방송사업자 모두 이 점을 유념해서 단순 평가 때문이 아닌 진정 차별 없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방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1분 폐회 】